

대학입학전형회피및제척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학생선발을 위한 평가 및 관리업무에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 지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회피, 제척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피”는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스스로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척”은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을 입학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수한 관계”는 배우자, 형제, 자녀, 친인척(4촌 이내)을 포함한 모든 지인 중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회피·제척제도는 우리대학의 모든 입학전형에 적용한다.

제4조(신고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피 및 제척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가 지원한 경우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친인척(4촌 이내)을 포함한 지인이 지원한 경우
3. 개인적인 감정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지원한 경우

제5조(방법 및 절차) ① 회피 사유가 있는 교직원은 입학전형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학 입학전형 회피 자진 신고서를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입학전형 회피 자진 신고서를 제출한 교직원과 제척 사유가 있는 교직원은 입학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무처 입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자처리) 회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원자의 합격에 부정하게 기여한 교직원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책임을 물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입학전형 회피 자진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연락처	

☐ 지원자 인적사항

수험번호		교직원과의 관계	
지원학과			
모집시기	☐ 신입학(수시1차모집) ☐ 신입학(수시2차모집) ☐ 신입학(정시모집) ☐ 편입학		
전형유형	☐ 정원내 일반전형 (☐ 실기 ☐ 면접) ☐ 정원내 특별전형 ☐ 정원외 특별전형 (☐ 실기 ☐ 면접) ☐ 기타(편입학 등)		

위와 같이 회피 자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_____(서명)

국제예술대학교총장 귀하

